발송번호: 9-5-2025-035590342

발송일자: 2025.04.11.

수신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 (만

년동) 310호(골드벤처타워)(특허법률사무

소케이원)

권도훈 귀하(귀중)

35203

^{특 허 청} 특허결정서

명 주식회사 누크랩스 (특허고객번호: 120220502860) 출 원 인 성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00, 5층(양재동, 윤화빌딩) 대 명 권도훈 리 인 성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 (만년동) 310호(골드벤처타워)(특허법률사무소케이원) 발 명 자 성 명 안태웅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23 계룡리슈빌아파트, 111동 104호 호 10-2024-0071566 출 원 번 칭 암호화폐 통합 거래 관리 시스템 명 의 명 청 구 항 수 2

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. (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 다.)

[특기사항]

이 건 발명의 선출원에 대한 검색은 2025.03.24 까지 출원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이 날짜 이후 조약우선권 주장을 통해 진입하는 출원에 의한 특허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 또 는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. 끝.

[참고문헌]

- 1. KR1020190066514 A
- 2. KR1020190092967 A
- 3. KR1020200125992 A
- 4. KR102250451 B1

2025.04.11.

특허청 전기통신심사국

컴퓨터심사과





<< 안내 >>

【 분할출원, 재심사 청구 및 전자등록증 발급 】

- 1.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(다만.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)에 분할출원할 수 있 습니다(재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일까지).
- 2.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 재심사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재심사 청구 시에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 내 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결정은 취 소된 것으로 봅니다.
- 3. 2018. 7. 1. 설정등록부터는 특허로(http://www.patent.go.kr)에서 「전자등록증 신청」을 사전에 하거나, 납부서(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)에 등록증 수령 방법 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하면 설정등록료가 1만원 차감됩니다(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 감면). 전자등록증은「전자등록증 수신함」을 통해 전자등록증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 으며. 전자등록증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기 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.
- ※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☎1544-8080 로, 이 통지서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컴퓨터심사과 ☎042-481-8664(대표번호)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특허로(www.patent.go.kr) 또는 특허청(www.kipo.go.kr)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심사 진행 상황, 서류 제출 및 절차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(특허청)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4동 (둔산동, 정부대전청사)

특허(등록)료 · 수수료 · 등록면허세 · 인지세 납부안내서(영수증)

- 1.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과 관련한 요금 고지를 위해 본 안내서를 송부드립니다.
- 2.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, 청구항 축소,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특허(등록)료에 금액 가산 또는 차감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(등록)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
- 3. 이 고지서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특허청 본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4.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,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.

- ※ 최종 납부금액이 '₩0원'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, 반드시 「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」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On-Line(특허로)이나 서면(우편, 방문)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아래의 수수료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자번호(전자납부번호)로 조회하여 납부하거나, 다음 장에 기재된 고객님의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CD기/ATM기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.(타행이체 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)

납입고지서 및 영수증(납부자용)

| 세입징수관서 | 특 허 청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계 좌 번 호 | 1 2 7 9 9 6 - 6 | | |
| 납 부 자 번 호 | 0131-9-5-2025-0355903-42 | | |
| 출원·등록·심판 번 호 | 10-2024-0071566 | | |
| 특허(등록)료 및 수수료 | ₩111,000원 | 등록 면허세 | ₩0원 |
| | 감면사유 있을시 감면 적용된 금액 | 지방 교육세 | ₩0원 |
| 감면사유 | 없음 | 인 지 세 | ₩0원 |
| | | 차감금액(전자등록증) | - ₩0원 |
| 최종 납부할 금액 | ₩111,000원 | | |
| 정상납부기일 |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| | |
| ★ 금액기재 앞 난에 ₩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. | | | |

납부자 성명 권도훈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117번길 66 (만년동) 310호(골드벤처타워)(특허법률사무소케이원)

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.



한국은행취급점 영 수 인

징수결정전 납입 납부서 (수납은행용 또는 한국은행용)

| 세입징수관서 | 특 허 청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
| 계 좌 번 호 | 127996-6 | | |
| 납 부 자 번 호 | 0131-9-5-2025-0355903-42 | | |
| 출원·등록·심판 번 호 | 10-2024-0071566 | | |
| 특허(등록)료 및 수수료 | ₩111,000원 | 등록 면허세 | ₩0원 |
| | 감면사유 있을시 감면 적용된 금액 | 지방 교육세 | ₩0원 |
| 감면사유 | 없음 | 인 지 세 | ₩0원 |
| | | 차감금액(전자등록증) | - ₩0원 |
| 최종 납부할 금액 | ₩111,000원 | | |
| 정상납부기일 |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| | |
| * 금액기재 앞 난에 ₩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. | | | |

위와 같이 수납 의뢰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한국은행취급점 영 수 인

* 수납기관에서는 굵은 선 안의 내용을 반드시 전산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고객 전용 입금 계좌

- * 납부에 이미 이용한 입금 계좌는 재이용할 수 없음
- * 아래의 계좌번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납부 요망

| 금융기관 | 계좌번호 | 금융기관 | 계좌번호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농협은행 | 790-0594-8668-104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[참고] 요금의 종류

- 가. 특허료 등록료
- 나. 수수료: ① 출원료 ② 심사청구료 ③ 심판청구료 ④ 국제출원수수료 ⑤ 보정료
 - ⑥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 그 밖의 수수료
- 다.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갱신 등록에 한함]
 - 상표권 설정 및 갱신등록 : 9,120원(등록면허세: 7,600원, 지방교육세: 1,520원)
 - ·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: 14,400원(등록면허세: 12,000원, 지방교육세: 2,400원)
 - ·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: 21,600원(등록면허세: 18,000원, 지방교육세: 3,600원)
- 라. 인지세: 「인지세법」에 따른 인지세액

《 설정등록료 납부 시 유의사항 》

- □ 2021년 1월 4일부터 설정등록료가 정상적으로 납부되고,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정확한 경우 설정 등록료를 납부한 날(당일) 설정등록이 완료됩니다. 따라서, 납부 전 제출해야 할 선행서류(분할출원, 권리관계변경 등)가 있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의 위 사항을 참고하여 **설정등록료를 납부한 이후에 등록신청반려요청서를 제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<<특허(등록)료 납부 안내>>

1. 설정등록료(1~3년차분) 및 연차등록료

| 권 리 | 구 분 | 설정등록료 (1~3년분) | 연차등록료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
| 면 디 | | | 4~6년 | 7~9년 | 10~12년 | 13~15년 | 16~25년 |
| 특 허 | 기본료 | ★매년 13,000원씩 39,000원 | 매년 36,000원 | 매년 90,000원 | 매년 216,000원 | 매년 324,000원 | |
| | 가산료 (청구범위 1항마다) | ★매년 12,000원씩 36,000원 | 매년 20,000원 | 매년 34,000원 | 매년 49,000원 | 매년 49,000원 | |
| 실용신안 | 기본료 | ★매년 12,000원씩 36,000원 | 매년 25,000원 | 매년 60,000원 | 매년 160,000원 | 매년 240,000원 | |
| | 가산료 (청구범위 1항마다) | ★매년 4,000원씩 12,000원 | 매년 9,000원 | 매년 14,000원 | 매년 20,000원 | 매년 20,000원 | |
| 디자인 | 심사 | ★매년 1디자인마다 25,000원씩 75,000원 | 매년 35,000원 | 매년 70,000원 | 매년 140,000원 | 매년 210,000원 | |
| | 일부심사 | ★매년 1디자인마다 25,000원씩 75,000원 | 매년 34,000원 | 매년 34,000원 | 매년 34,000원 | 매년 34,000원 | |

[※]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10% 할인('19.12.31개정)

2. 납부기간

- ① (설정등록료)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② (연차등록료) 제4년분 이후의 연차등록료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.(예:설정등록일이 2014.2.4.인 경우 2017.2.4.까지 4년차 등록료를 납부) 그리고,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(추가납부기간)에 납부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매월 3%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③ 설정등록료에 대한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출원포기로 간주되어 등록받을 수 없으며, 연차등록료에 대한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3. 납부방법

- ①「납입고지서 및 영수증」을 이용하는 방법 :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달받은 「납입고지서 및 영수증」상의 정상납부일까지 은행,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 (http://www.giro.or.kr)에서 등록료를 납부합니다.(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)
- ②「납부서」(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)를 이용하는 방법 :
 - ① 「납부서」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: 특허청(서울사무소 등)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은행,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(http://www.giro.or.kr)에서 특허료를 납부합니다.(단, 금융기관영업시간 이후에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)
 - ①「납부서」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: 「납부서」를 작성한 후 등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환증서로 바꾸어 「납부서」와 함께 특허청에 보내야 합니다.
 - * 보낼 곳 : 우)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.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등록과

4. 등록료 감면(면제) 및 일부청구항(일부디자인)을 포기하는 경우

-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, 학생, 중소기업 등이 등록료를 감면(면제)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납부서」와 함께 감면 또는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② 설정등록료 납부시 일부 청구항(일부디자인)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납부서」에 포기대상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(앞쪽)

납 부 서

| | <u>-</u>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【납부구분】□설정 등록료 | □연차 등록료 |
| □존속기간갱신등록료 2회차 납부 | □드로크 비져 |
| □지정상품·업무 추가 등록료 【등록권리자】 | □등록료 보전 |
| 【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】 | |
| 【특허고객번호】 | |
| (【전화번호】) | |
| (【전자우편 주소】) | |
| (【지분】)(기재요령 제2호 참조) | |
| 【납부자】 | |
| 【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】 | |
| (【특허고객번호(대리인번호)】) 【주소】 | |
| 【ㅜㅗ】 【전화번호】 | |
| (【대위신청인】) | |
| (【성명(또는 법인의 명칭)】) | |
| (【주소】) | |
| (【대위원인】) | |
| 【납부대상의 표시】 | |
| 【출원번호(특허번호, 등록번호)】 | |
| 【청구항(디자인, 상품류)수】 | |
| (【대표 지정상품(업무)의 명칭】) | |
| (【디자인의 일련번호】) | |
| (【포기대상】) | |
| (【납부연차(납부회차)】) | |
| (【감면사유】) | |
| (【특약】) | |
| [특허(등록)료] | |
| 【특허(등록)료】 (【드로머리네】) | |
| (【등록면허세】) 【합계】 | |
| 【수수료자동납부번호】 | |
| (【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】) | |
| (【회복신청】 | |
| 【회복신청 원인】□ 특허발명(등록고안, 등록디자인 |)의 특허(등록)권 회복 |
| □ 정당한 사유로 소멸된 특허(등록 | 록)출원 및 특허(등록)권 회복 |
| (【특허(등록)증 수령방법】) □전자문서 □방문수령(| (대전) □방문수령(서울) □우편수령 |
| | 남) □방문수령(서울 송달함) |
| (【특허(등록)증 수령인】) | |
| (【성명】) | |
| (【전자우편 번호】) | |
| (【주소】 및 【우편번호】) | |
| 【특허(등록)료・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정 | 덩정신청】 - |
|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. | |
| 납부자 | (서명 또는 인) |
| (대위신청인) | , |
| | |
| 【첨부서류】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(출원, 등록단 의 활용 또는 기재요령 제13호 참조) | 세에지 이미 제물인 이야에 적는 제물자규에 점무된 서 |
| 의 필증 모든 기세요당 제13호 점모) (【서류명】) | |
| (【특허(등록)번호(출원번호)】) | |
|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| |